

인천지방법원 2024. 7. 9 선고 2023가합5873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

담당변호사 장두식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4. 6. 18.

판 결 선 고 2024. 7. 9.

주 문

-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,
가.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각 ‘호수’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명도하고,
나. 2023. 10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각 ‘월 차임’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주식회사 B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피고 주식회사 C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장민석, 판사 김정윤, 판사 나경식

별지